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고 제2024-29 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(종료)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(종료)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5. 1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(종료)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- 근 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, 1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, 같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20조
- 공고대상자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김○슬	'98.8.14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(종료)조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중단(종료)	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른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,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(중단) /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(3회~5회차) 미제출 및 연락두절 등	취업지원 중단(종료) 및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 등	경북 구미시 송정대로99 (이하 생략)

- 공고기간: 2024. 5. 1. ~ 2024. 5. 15.(15일)
-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손진숙주무관(Tel. 054-440-339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